

순번	조문	비고
1	제1조(목적)	“난민의 인정절차” 삭제
2	제2조(정의) 제3호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서 “난민”을 여전히 언급하고 있어 삭제하지 않음 - 난민법에 따른 정의와 일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3	제2조(정의) 제4호	- 난민여행증명서에 관한 사항(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 및 제76조의 6)을 난민법으로 가져오름 <b>전체로</b>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난민여행증명서란 난민법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를 말함을 명시 -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체류자격이 부여됨에 비추어볼 때 입국심사 전에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도(그리고 유효한 여권과 사증이 없는 경우에도) 입국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난민법 제6조 제2항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제7조(외국인의 입국) 제4호	삭제하지 않음
5	제16조의 2(난민의 임시상륙허가)	난민법 제6조에 의해 커버됨을 <b>전체로</b> 삭제(예를 들면 배에 승선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항만”에서 난민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6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1항 제3호	삭제하지 않음
7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4항	-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에 의해 커버됨을 <b>전체로</b> 삭제 - 난민법 제3조에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64조 및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대신 그대로 두고 표현만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	제64조(송환국) 제3항	-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에 의해 커버됨을 <b>전체로</b> 삭제 - 난민법 제3조에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64조 및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76조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송환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9	제76조의 2(난민의 인정)	삭제
10	제76조의 3(난민인정의 취소)	삭제
11	제76조의 4(이의신청)	삭제

12	제76조의 5(난민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난민법으로 가져옴을 <b>전제로</b> 삭제
13	제76조의 6(난민인정서 등의 반납)	삭제(필요하면 난민법에 규정)
14	제76조의 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시 체류허가의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난민법에 의하더라도 송환이 금지된 국가 이외의 국가로의 강제퇴거는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난민법으로 가져오되,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li> <li>-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와 관련 난민 등에 대한 일반적인 특례(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2에서 열거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을 처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ul>
15	제76조의 8(난민 등의 처우)	난민법 제36조 내지 제47조에 의해 커버됨을 <b>전제로</b> 삭제
16	제76조의 9(난민 등의 지원)	지원시설에 관한 부분 등을 삭제할 것인지, 난민법에 가져올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일단 삭제
17	제76조의 10(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법 제45조에서 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
18	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항 제2호	난민법 제11조에 의해 커버됨을 <b>전제로</b> 삭제
19	제80조(사실조사) 제2항 제3호	난민법 제10조 및 제22조 제6항에 의해 커버됨을 <b>전제로</b> 삭제
20	제95조(벌칙) 제10호	삭제(필요하면 난민법에 규정)
21	제97조(벌칙) 제7호	삭제(필요하면 난민법에 규정)
22	제99조의 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하지 않음</li> <li>- (가능하면) 표현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ul>

※ 삭제하기 전에 검토나 난민법에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을 전제로 삭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칙 규정안에서는 이 경우에도 일단 다 삭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난민법에 대한 추가코멘트:

-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규정을 정리하더라도, 사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율되므로 난민법 제4조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6조 제1항에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의 표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6조 제2항으로 입국허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20조는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용이하게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난민이 아님을 전제로 한 듯한 표현이어서 조금 이상합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난민인정절차가 계속된다는 것인지...등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 제21조 제1항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장기화됨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 보호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제21조 제2항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부가할 수 있는 조건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난민인정절차와 관련 난민법을 특별법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6조 제1항에서 “난민인정절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토록 한 것이 이상합니다. 제26조 제2항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지만, 행정절차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인 행자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법무부가 동의하는 이상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

을 것 같긴 하지만).